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14회 임시회 (2017. 7. 17.)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송인수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안 건 명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」 제정 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7. 7. 7. (금)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

- 2017. 7. 10. (월)

4. 관련근거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7조(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)
-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 책임관련 조례 제·개정 추진계획
(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-1076호, 2017. 1. 16.)

5. 참고사항
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입법예고 (2017. 6. 1. ~ 2017. 6. 21.) 결과 : 별도 의견 없음.

6. 개정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라 제설·제빙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관리범위 및 책임 범위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, 제설·제빙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,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7. 주요 개정내용

- 가. 건축물 내에 거주·비거주 경우와 공동 주택, 공공시설, 다중이용시설의 경우
제설·제빙의 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의 책임순위 명시 (안 제3조)
- 나. 보도·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,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·제빙 범위
명시 (안 제4조)
- 다. 보도·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·제빙 시기 명시 (안 제5조)
- 라. 보도·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,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·제빙방법 명시
(안 제6조)
- 마. 제설·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사항 명시 (안 제7조)
- 바. 제설·제빙 시 안전 위험 예상 시에 작업의 중지 명시(안 제8조)
- 사. 제설·제빙 도구 비치 명시 (안 제9조)

8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라 제설·제빙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
구체적인 관리 및 책임 범위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,
제설·제빙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,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
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고자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,

- 조례의 주요 내용은
 - 안 제3조는 건축물 내에 거주·비거주 경우와 공동 주택, 공공시설, 다중이용 시설의
경우 제설·제빙의 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의 책임 우선 순위를 정하였으며,
 - 안 제4조는 보도·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,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·제빙
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5조는 보도·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·제빙시기를 명시화 하였으며,
 - 안 제6조는 보도·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,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·제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,
 - 안 제7조는 제설·제빙 작업 시 안전유의 사항을 명시화하였고,
 - 안 제8조는 제설·제빙 시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단 및 안전조치를 명시화하였으며,
 - 안 제9조는 건축물관리자는 제설·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·관리 토록 하였음.
-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27조(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)의 규정에 의해,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관리범위와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,
 - 이를 우리구 조례로 제정하여 제설·제빙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,
 - 다만, 상위법령에 벌칙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, 본 조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한 주민의 참여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.

관계법령 및 근거

■ 자연재해대책법 (제27조)

제27조(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) ① 건축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(이하 "건축물관리자"라 한다)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(歩道), 이면도로, 보행자 전용도로, 시설물의 지붕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)에 대한 제설·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.>

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·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3.7.]

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(제22조의8)

제22조의8(지붕 제설·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) 법 제27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. <개정 2017.1.26.>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
 - 가.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
 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
 - 다.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 [본조신설 2015.11.30.]